무항생제 사육의 노하우를 찾아서!

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 기준

편 집 부

일반적으로 '무항생제 축산물'은 항생제·항균제 등이 첨가되지 않은 일반사료를 급여하여 인증기준을 지켜 생산한 축산물을 말한다.

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경영·사육·관리 등의 구비요건을 갖추어 심사를 거쳐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을 받을 수 있다.

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 시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구비요건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한다(「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제3항,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제9조).

인증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한 정의는 〈표 1〉과 같다.

1. 경영관리에 관한 구비요건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제5호 가목

(1) 1년 이상의 경영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열람을 요구하는 때에는 이에 응할 수 있어야 한다.

(가) 가축입식(入殖, 가축 등을 외부에서 들여와 기르는 것) 등 구입 사항과 번식 내용

(나) 사료의 생산·구입 및 급여 내용

(다) 질병발생 및 예방관리계획

(라) 격리기간을 포함한 특정목적을 위하여 투여되는 처치·동물약품·첨가제·예방접종 등 약품사용 및 질병관리의 내용

(마) 축산물의 생산량·출하량, 출하처별 거래내역 및 도축·가공업체 내용

〈표 1〉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기준에서 사용되는 용어 정의

용어	정의
가축	「축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가축
동물용의약품	동물질병의 예방·치료 및 진단을 위하여 사용하는 의약품
사육장	가축사육을 목적으로 하는 축사시설이나 방목·운동장
휴약기간	유기축산물 생산을 위하여 사육되는 가축에 대하여 그 생산물이 식용으로 사용하기 전에 동물용의약품의 사용을 제한하는 일정기간
무항생제사료	사료 안에 항생제, 합성항균제, 호르몬제 등 동물용의약품이 포함되지 않도록 적합하게 생산된 사료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

(바) 퇴비 · 액비의 살포량 및 시용일자 등 가축분뇨의 자원화 이용에 대한 내용

(2)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이 심사를 위하여 위탁사육의 경우 자축공급 농가기록 등 필요한 정보를 요구하는 때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2. 축사 및 사육조건에 관한 구비요건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제5호 나목

(1) 축사조건

(가) 축사는 다음과 같이 가축의 생물적 및 행동적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어야 한다.

1) 사료와 음수(飮水)는 접근이 용이할 것

2) 공기순환, 온도 · 습도, 먼지 및 가스농도가 가축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 이내로 유지되어야 하고, 건축물은 적절한 단열 · 환기시설을 갖출 것

(나) 축사의 밀도와 관련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정하는 조건을 준수해야 한다.

※축사밀도 등에 대한 조건은 「친환경축산물 인증 부가기준」 (2007. 4. 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7-5호) 제1조 나목과 같다.

(다) 축사 · 농기계 및 기구 등은 청결하게 유지하고 소독함으로써 질병감염체의 증식을 억제하여야 한다.

(라) 축사의 바닥은 청결 및 건조해야 하며, 충분한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2) 무항생제사육 가축과 일반가축의 병행생산은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허용할 수 있다.

(가) 무항생제사육 농장의 가축은 일반가축과 동일 축사 내에서 사육되지 않아야 한다.

(나) 무항생제사육 가축, 사료취급, 약품투여 등은 일반가축과 구분하여 정확히 기록관리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

(다) 무항생제사육 가축은 일반 가축사료, 금지물질 저장, 사료공급 · 혼합 및 취급지역에서 안전하게 격리되어야 한다.

3. 가축의 입식 및 번식 방법에 관한 구비요건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제5호 다목

(1) 교배는 종축(種畜)을 사용한 자연교배를 권장하되, 인공수정 및 수정란이식기법을 허용할 수 있다. 다만, 번식호르몬 처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무항생제 사육의 노하우를 찾아서!

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 기준

(2) 다른 농장에서 가축을 입식(入殖)하려는 경우 해당 가축은 무항생제 인증기준에 맞게 사육된 가축이어야 한다. 다만, 이를 확보할 수 없는 때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의 승인을 받아 일반 가축을 입식할 수 있다.

(가) 이유 직후 또는 부화 직후의 가축인 경우(원유생산용, 알생산용과 녹용생산용 가축의 경우 육성축 및 성축 입식 가능)

(나) 가축의 번식방법이 (1)(자연교배권장, 인공수정 및 수정란 이식기법허용, 번식호르몬 처리는 허용 안 됨)에 적합한 경우

4. 전환기간에 관한 구비요건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제5호 라목

(1) 무항생제 축산물을 생산·판매하려는 자는 생후부터 출하 시까지 전 기간 동안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제5호의 인증기준(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해야 한다. 다만, 일반적으로 사육한 가축을 무항생제 축산물로 생산·판매하기 위하여 입식할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마목(1) 본문의 전환기간(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 중 전환기간) 이상을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제5호의 인증기준(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기준)에 따라 사육해야 한다.

5. 사료 및 영양관리에 관한 구비요건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제5호 마목

(1) 무항생제 축산물의 생산을 위한 가축은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를 급여해야 한다.

(2) 무항생제 축산물 생산과정 중 심각한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항생제가 첨가되지 않은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인증기관은 일정기간동안 일반사료를 급여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천재·지변, 극한 기후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료급여가 어려운 경우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제5호 마목(1)에서 규정한 무항생제 사료의 급여 비율을 10% 완화할 수 있다(「친환경축산물 인증 부가기준」 (2007. 4.

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고시 제2007-5호) 제4조 나목].

(3) 다음에 해당되는 물질을 사료에 첨가해서는 안 된다.

(가) 합성항균제 ·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 등의 동물용의약품

(나) 반추(反芻)가축에게 포유동물에서 유래한 사료(우유 및 유제품을 제외)는 어떠한 경우에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

※반추(反芻)가축은 한번 삼킨 먹이를 다시 게워 내어 씹는 특성을 가진 가축을 말한다.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한 신선한 음수(飮水)를 상시 급여할 수 있어야 한다.

6. 동물복지 및 질병관리에 관한 구비요건

가. 질병예방조치(「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제5호 바목)

(1) 가축의 질병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통해 예방해야 한다.

(가) 가축의 품종과 계통의 적절한 선택

(나) 질병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육장 위생관리

(다) 비타민 및 무기물 등 급여를 통한 면역기능 증진

(2) 가축의 기생충감염 예방을 위하여 구충제 사용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한 예방백신을 사용할 수 있다.

(3) 법정전염병의 발생이 우려되거나 긴급한 방역조치가 필요한 경우 우선적으로 필요한 질병예방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나. 질병치료 등(「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제5호 바목)

(4)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제5호 바목 (1)부터 (3)까지에 따른 예방관리에도 불구하고 질병이 발생할 경우 수의사의 처방에 따라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가축은 해당 약품 휴약기간의 2배가 지나야 무항생제 축산물로 인정할 수 있다.

(5) 약초 및 천연물질을 이용하여 치료를 할 수 있다.

(6) 질병이 없는데도 동물용의약품을 정기적으로 투여하거나, 생산성 촉진을 위해서 성장촉진제 및 호르몬제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무항생제 사육의 노하우를 찾아서!

무항생제 축산물의 인증 기준

7. 운송 · 도축 · 가공과정의 품질관리에 관한 구비요건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제5호 사목

(1) 생축의 수송은 조용하고 상처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가축의 도축은 오염방지 등을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하는 도축장에서 실시되어야 한다.

(3) 도체(屠體) 및 원유 등 해당 축산물은 가공공정의 오염방지를 위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9조에 따른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적용(농가에서 직접 가공하는 경우는 제외)하는 축산물가공장에서 가공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생산된 원유와 별도 구분하여 집유 및 가공처리를 하여야 한다.

※ 도체(屠體)란 도살한 가축의 가죽, 머리, 내장 등을 떼어 낸 나머지를 말한다.

(4) 생축의 저장 및 수송 시에는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외부로부터의 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5) 무항생제 축산물로 출하되는 축산물에 동물용의약품이 잔류되어서는 안 된다. 다만, 수의사 관리 하에 동물용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이를 허용하되 이 경우 식품의약품안정청장이 고시한 식품공전의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의 10분의 1 이하여야 한다.

※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및 '축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은 「식품의 기준 및 규격」(2009. 9. 15.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09-154호)에서 정하고 있다.

(6) 유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무항생제 축산물의 변성이나 부패방지를 위하여 임의로 합성물질을 첨가할 수 없다. 다만, 물리적 처리나 천연제제는 무항생제 축산물의 화학적 변성이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다.

(7) 무항생제 축산물 포장재는 「식품위생법」의 관련 규정에 적합하고 가급적 생물분해성, 재생품 또는 재생이 가능한 자재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해야 한다.

8. 가축분뇨의 처리에 관한 구비요건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표 3 제5호 아목

– 가축분뇨의 처리는 「친환경농업육성법 시

행규칙」 별표 3 제3호자목(1)부터 (4)까지(유기축산물의 인증기준 중 가축분뇨의 처리)를 준용한다.

[별표 3] 제3호 자목. 가축분뇨의 처리

(1) 가축사육 시 발생하는 가축분뇨는 완전히 부숙시킨 퇴비 또는 액비로 자원화하여 초지나 농경지에 환원함으로써 토양 및 식물과의 유기적 순환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가축의 운동장에서는 가축의 분뇨가 외부로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청결히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3) 가축분뇨의 배출시설과 처리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대해서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제17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4) 가축분뇨퇴·액비는 표면수 오염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수준으로 사용하되, 장마철에는 사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9. 인증 절차

가. 신청서 작성 및 첨부서류

(1) 신청서 : 친환경농업육성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에 의거 신청

(2) 신청서 제출기관 및 안내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시·군 출장소

(3) 신청서 첨부서류 : 생산계획서, 영농관련 자료

나. 신청기한 : 연중신청이 가능

다. 인증수수료

- 규칙 제22조에 따라 인증신청서 1건당 3만원 상당의 수입인지 및 심사원 출장비

10.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마크

2007년 무항생제 축산물 인증제가 도입됨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표시가 가능하며,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하지 못한다.

만약 미 인증품에 '무항생제 축산물'이라는 표시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